

업체의 사업장내 재산”으로 하며, 제4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질의회신·지침·편람 등)”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조례시행일까지 그 납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매각대금(기 납부한 매각대금 및 연체금액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의 연장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인 20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기간내에서 매매계약을 변경·체결하여야 한다.
- ③(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3항 단서·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등의 대부료 산출 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 ④(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연체요율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개정조례안은 2000. 2. 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0. 2. 23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0. 2. 2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초등학교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수강료 징수에 있어 현행 336시간 과정 외에 672시간 과정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강료 징수방법을 개강 5일전까지 전액징수토록 하던 것을 개강전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까지 전액 징수하되 필요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현행 336시간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 1인당 연수경비는 총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1인 1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표1)
4. 검토의견
  - 1999. 6. 21 제정된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교사 전담교사 임용에 필요한 336시간 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수강료 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 '99. 9월 교육부에서 기 선발된 교과전담교사에게 672시간의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 정규교사 자격증을 부여토록 추진함에 따라, 추가보수교육 과정(672시간)에 대한 수강료징수근거가 필요하게 된 것임.
  - 따라서, 현행 과정당 징수하고 있는 연수경비를 연수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서 징수토록 함으로써 추가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 다만, 수강료 납부시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인해 수강대상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